

	학술연구비 지원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3. 9. 3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	교무입학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전임교원의 건전한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①대학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②연구기간 중 퇴직 예정이거나 6개월 이상 해외출장 계획이 확정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③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3조(학술연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규정에 따른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비 지급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학과장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반대 위원수가 같을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기간) 연구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투고증명서 제출 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①학술연구비 지원분야 및 지원액은 <별표1~별표3>에 따른다.

②지원분야는 논문, 저서, 작품출품 및 전시, 음악분야 등으로 하며, 교원연구성과 평가 기준과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

제7조(연구비 신청) ①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학술연구비신청서<별표 4>와 학술연구내용계획서<별표 5>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교무입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②학술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된 연구과제에 한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술연구계획변경신청서<별표 6>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연구비 지급) 학술연구비 결과보고서 및 실적물에 대한 학술연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제10조(연구결과보고) ①연구교원은 연구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학술연구결과보고서<별표 7>와 학술연구비사용내역서<별표 8>를 제출해야 한다.

②게재논문은 논문의 여백에 “ 이 논문은 0000학년도 목포과학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영문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rch fund Mokpo Science University, 0000)이라 표기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논문, 저역서 분야			
종류	지원분야(기준연구비)	지급기준	
논문	국제전문학술지(200만원) -SCI급/SCOPUS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단독 연구시 100%	
	국제일반학술지(150만원) SCI급/SCOPUS 학술지를 제외한 기타 국제발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공동연구시 교내연구자 1인만 인정한다.	
	학진등재지(100만원)	저자수	주저자 공동저자
	학진등재후보지(80만원)	2인	60% 40%
	국내전문학술지(50만원) - KCI(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국내에서 발행하는 국제전문, 국제일반 학술지는 제외)	3인	50% 각 25%
	국내일반학술지-전국규모학술지(30만원) -KCI급 학술지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기타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4인	40% 각 20%
저역서	저서, 편저, 번역서(50만원) -전국규모, 대학교재급 이상	5인 이상	30% 각 70%× (1/저자수) ※저자수 : 주저자를 제외한 저자수
		- 인정된 출판사에서 ISBN 저서 - 단독연구시 100% - 공동연구시 (교내연구자 1인만 인정한다.) 2인 60%(주저자), 40%(공동) 3인 50%(주저자), 각 25%(공동) 4인 40%(주저자), 각 20%(공동) 5인이상 30%(주저자), 각 70%×(1/저자수)(공동)	

〈별표 2〉

예능계열 실기부문 등급 분류		
종류	지원분야(기준연구비)	평가기준
전시 및 작품 발표	A급: 100만원 1) 해외에 공인된 미술관, 화랑에서 초대 개인전 2)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개인전 3) 국제그룹전(3개국 이상) 4) 국제 미술박람회(Art Expo) 초대출품	- 단독연구시 100% - 공동연구시 (교내연구자 1인만 인정한다.) 2인 60%(책임자), 40%(공동) 3인 50%(책임자), 각 25%(공동) 4인 40%(책임자), 각 20%(공동) 5인 이상 30%(책임자), 각 70%×(1/저자수)(공동)
	B급 : 80만원 1) 시단위 이상에서의 개인전 2)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3)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룹전(전국규모)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전, 한국공예가협회전 -대한산업미술가협회전, 한국미술협회전 -대한민국서예대전 추천 및 초대 출품	
	C급: 50만원 일반그룹전	

〈별표 3〉

음악분야 등급 분류		
종류	지원분야(기준연구비)	평가기준
연주 (지휘, 음악감독, 작품발표, 협연, 독주회, 독창회, Opera 주역)	A급: 100만원 1) 세계 5대 교향악단과의 연주 Wien Phil, Berlin Phil, New York Phil, London Phil, Peterburg Phil(구 레닌그라드) 2) 세계 5대 Opera 단과의 연주 Scala Opera, Metro Politan Opera, Royal Opera, Wien Stadt Opera, 볼쇼이오페라 3) OECF 국가의 전문공연장에서의 연주 4) 세계적 수준의 국내 연주 단체와의 연주 (K.B.S 교향악단, 서울시립합창단, 국립합창단, 서울시립교향악단, 국립Opera단) 5) 세계적 수준의 국내 4대 연주 홀에서의 연주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K,B,S홀, 국립극장) 6) 바이로이트 음악제, 아스펜 음악제, 쥘스 부르크음악제의 연주 7) Deutsch Grammonphon, EMO, DECCA, Poly Gram, Sony Label과의 Recording	
	B급 : 80만원 1) A급 1항 이외의 국가연주단체와의 연주 2) A급 2항 이외의 국가의 Opera 단과의 연주 3) A급 3항 이외 국가의 연주 홀에서의 연주 4) A급 4항 이외의 시립 연주단체 및 사단법인 등록이 된 전문 연주단체와의 연주 5) 도청소재지 이상 지역의 전문 공연장에서의 연주(익산시 포함) 6) A급 6항 이외의 국가음악제에서의 연주 7) 회원의 구성이 전국적이고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술회 및 연주회를 개최하는 학회 및 음악제에서의 연주(한국음악학회, 한국작곡가회, 한국 음악교육회, 서울음악제, 한국 현대 음악제, 현대음악제등) 8) A급 7항 이외의 학회 및 음악제에서의 연주	
	C급: 50만원 1) B급 4항 이외의 연주 단체와의 연주 2) B급 5항 이외의 장소에서의 연주 3) 회원구성이 교내 또는 지역에 국한되어 있거나 전국적인 회원 분포도를 갖고 있어도 2년 이상 정기적으로 학술회의 및 연주회를 개최하지 못하 는 학회 4) B급 7항 이외의 학회 및 음악제에서의 연주	

※ 1) 공동 연구 시 책임연구자 1인

2) 3년 이내 동일 Program 연구업적에서 제외

3) 연주단체(교향악단, 합창단, 실내악단, 관악합주단, Opera단, Ensemble)

〈별표 4〉

학술연구비 신청서(학년도)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소속 :		직위		성명 :		(인)
공동연구자	연번	소속	학과(부서)	직위	성명	비고	
	1						
	2						
	3						
	4						
연구보조원수	명						
연구수행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발표예정학술지 작품출품방법							
학술지 구분 작품출품규모							
위와 같이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 본 신청서는 A4로 작성하십시오
-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지 등급분류표 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분류표를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첨부하십시오

〈별표 5〉

학술연구내용 계획서

* 위 제목을 연구논문의 경우는 "연구내용 계획서"
작품출품의 경우는 "작품출품 계획서"
각 각 수정후 아래 순서에 의해 A4 서식으로 작성하십시오

1. 과제명 및 연구자 성명
2. 연구의 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4.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5. 참고문헌

〈별표 6〉

학술연구계획 변경신청서

신청자	소속 :	성명 :	최초 신청연도
변경 전 학술연구명			
변경 후 학술연구명			
변경사유 : 위와 같이 연구수행 등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최초 신청서 및 계획서를 새로 작성하여 첨부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 변경된 학술연구비신청서 1부, 변경된 연구내용 계획서 1부			

〈별표 8〉

학술연구비 사용내역서

학술연구명 :

연구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항 목		내 용	정산방법 및 제출서류
인 건 비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비	-연구비 100%까지 책정 사용 가능 -별도의 정산 및 증빙자료 불필요 -근로소득으로 과세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연구비의 50% 이내 -보조원의 계좌로 과세 후 송금하며, 연구책임자의 직접 지급함은 불가
연 구 경 비	참고문헌비	연구에 필요한 도서, 출판물 등 각종 자료 구입비	-도서목록이 기재된 거래명세표와 영수증
	여비	연구조사를 위한 출장 여비	-사전 출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출장신청서 사본 첨부) -우리대학 여비규정에 따라 정산 -영수증 첨부
	회의비	회의 관련 경비(연구자들에게 직접회의비 지급은 불가)	-회의록 및 영수증 제출
	게재료	논문게재 시 학회에 지급하는 게재료	-학회에서 발급하는 논문게재료 영수증
	인쇄비 및 수수료	연구과제와 관련된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거래명세표와 영수증
	기타경비	연구와 관련된 기타 제 경비	-실비 영수증
	1. 정산원칙에 의거 정산이 불가능한 금액은 연구활동비로 편성한다. 2. 연구경비 청구는 거래명세서(카드사용내역서) 등 첨부하여 신청한다. 3.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